

13. 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 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7년 6월 11일
대구광역시장 제출
- 회부일자 : 2007년 6월 11일 회부
- 상정일자
 - 제1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
 - 제1차 경제교통위원회(2007. 6. 22) : 상정, 원안가결

2. 주요골자

- 대구광역시교통영향평가대상지역범위구분에 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3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교통국장 권오곤)

- 금번 「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구분에 관한 조례」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
- 본 조례는 '87. 7. 24 제정된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」 제9조(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평가자)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 및 시설의 범위를 조례(제정 '88. 4. 1, 조례 제2200호)로 제정,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으로 구분하여 시행해 왔습니다만.

※ 조례 규정사항

- 도심지역·외곽지역 범위 : 3차순환선 내·외로 구분

- 그 후, 상위법령인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」 전면개정시('96. 6. 29, 대통령령 제15097호) 교통영향평가 및 심의의 대상(제13조 제1항 관련 별표1)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하였으므로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.

※ 시행령 개정 전·후 심의대상 비교

- 개정전 : 도심지역·외곽지역으로 구분
(도심지역, 외곽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)
- 개정후 : 도시교통정비지역 내·외로 구분
(도시교통정비지역 : 대구광역시 전역)

- 이상과 같이 「대구광역시 교통영향평가 대상지역 범위구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」은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를 폐지코자 함.

4. 검토보고 요지(검토보고자 : 전문위원 최해남)

- 본 폐지 조례안은 개정전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1조 및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」 제9조에 의거 1988년 4월 1일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 1996년 6월 29일 동법시행령 개정시 조례로 위임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시설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 구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.

- 먼저 당해 조례 폐지의 사유를 살펴보면

- 1986. 12. 31일 제정된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11조(교통영향평가의 실시)제1항 및 1987. 7. 24일 제정된 동법시행령 제9조(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평가자)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였으나
- 1996. 6. 29일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」 전문개정 시 조례 위임사항인 도심지역, 외곽지역 구분에 관한 사항이 삭제되었고,
- 1999. 12. 31일 「환경·교통·재해등에 관한영향평가법」의 제정으로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은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에서 삭제되었음.
- 따라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설치근거와 실효성이 상실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동조례의 근거가 되는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」이 1996. 6. 29일 개정되면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조례를 폐지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규사무의 관리·운영이 소

출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, 향후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법규사무의 효율적인 관리·운영에 보다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

질 의 요 지	답 변 요 지
<p>○근거 법령이 개정이 되었음에도 자치법규인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는데, 지역주민들이나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자가 이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문제가 된 적은 있는지?</p> <p>○교통영향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, 원칙 또 대구시의 교통영향평가의 기준을 건교부의 지침에 의거 5년마다 할 것이 아니라, 교통혼잡이나 교통분쟁이 야기되는 건축물·시설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10년이나 15년 정도의 다른 시의 사례처럼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해서 교통혼잡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원칙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람.</p> <p>○자치법규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, 동 조례 이외의 다른 조례도 이러한 사례가 없는지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.</p>	<p>○그런 문제는 없었음.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직접 규정을 하고 있어 시행령을 근거로 교통영향평가를 하였음.</p> <p>○적극 검토 하겠음.</p> <p>○그렇게 하도록 하겠음.</p>

6. 토론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